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합동방재센터)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구미 불산사고('12.9.27) 이후 「범정부 화학 재난 안전관리체계 개편」('13.7.19)에 따른 6개 산단 내 「합동방재센터」 건립 추진에 따라 대구, 경북을 관할하는 구미센터 조성
- 현재 구미 국가산업3단지에 입지하고 있는 합동방재센터는 특수 소방차량 주차 공간 부족, 화학재난사고 훈련공간, 장비보관 장소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신청사 건립(이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합동방재센터) 결정(변경) 필요
-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328	-	14,328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14,328	14,328	100.0	
농림지역	14,328	감) 14,328	-	-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가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36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4,328	100	▪ 대구 경북지역을 관할하는 합동방재센터 이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⑦ 법 제2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 위치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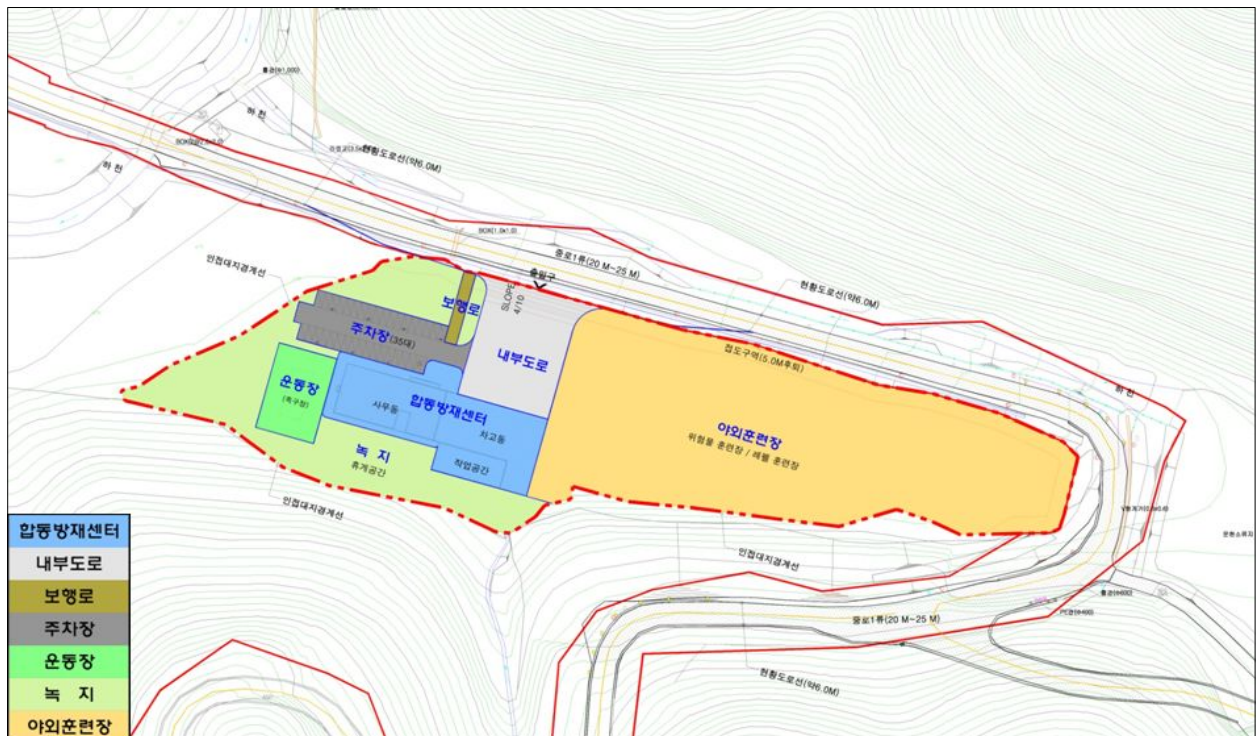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



○ 토지이용계획도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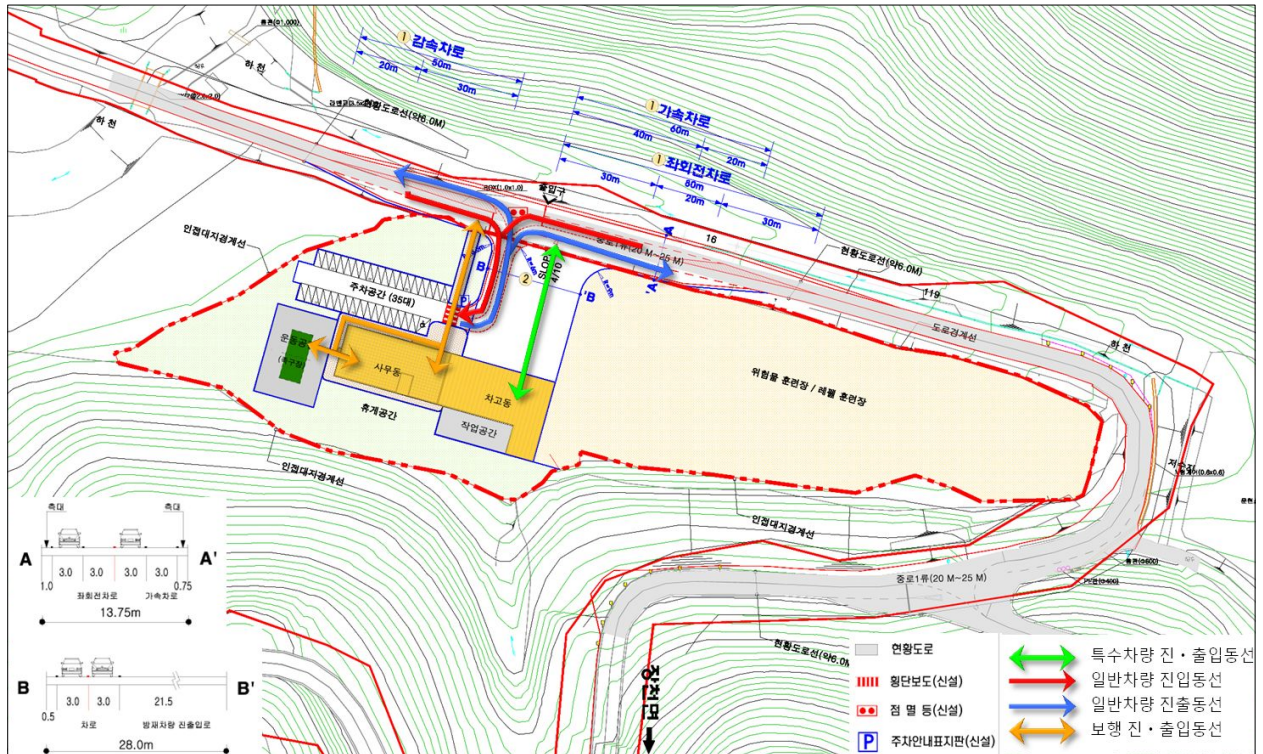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4,328	100.0	
합동방재센터	1,575	11.0	사무동, 차고동, 작업공간
내부도로	1,121	7.8	
보행로	86	0.6	
주차장	767	5.3	35대
운동장	499	3.5	족구장
녹지	2,877	20.1	휴게공간
야외훈련장	7,403	51.7	위험물 훈련장, 레펠 훈련장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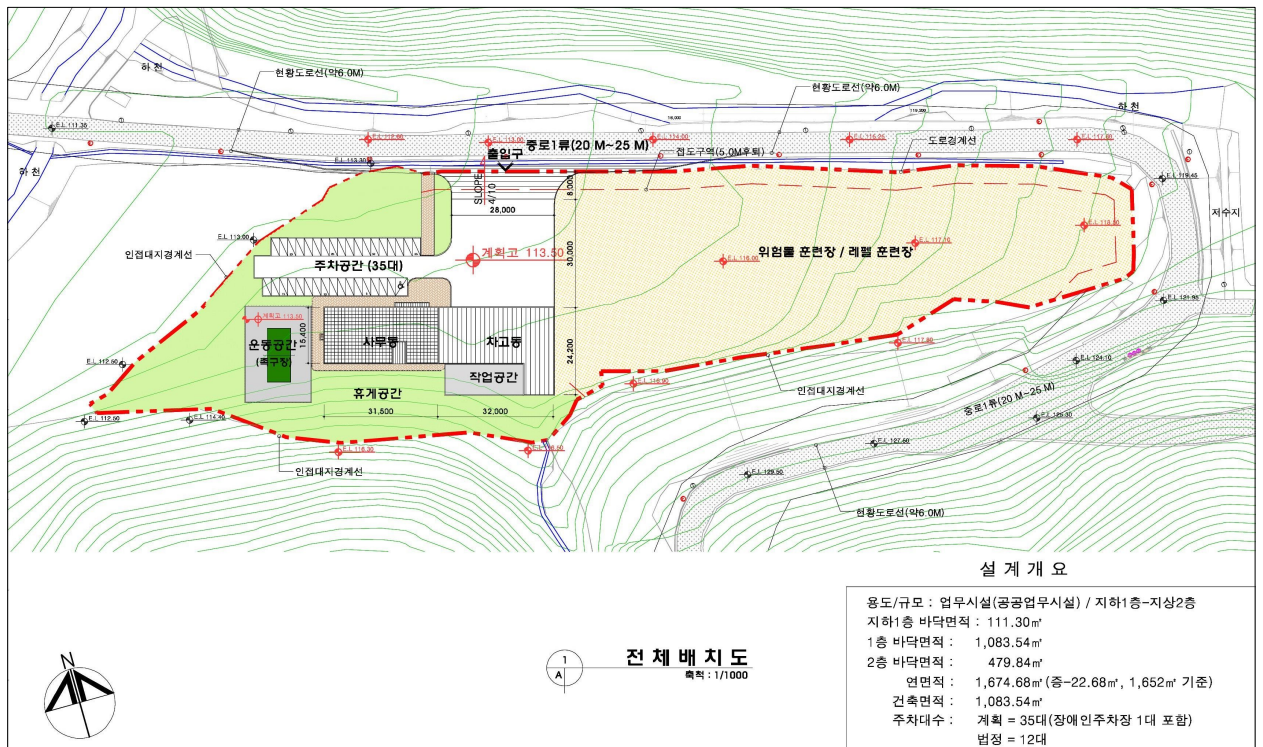
○ 교통처리계획도 “안”

교통처리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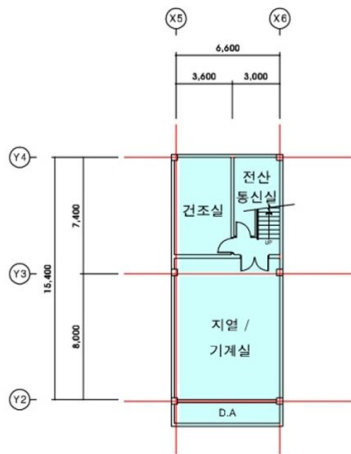
○ 시설배치계획도 “안”

시설배치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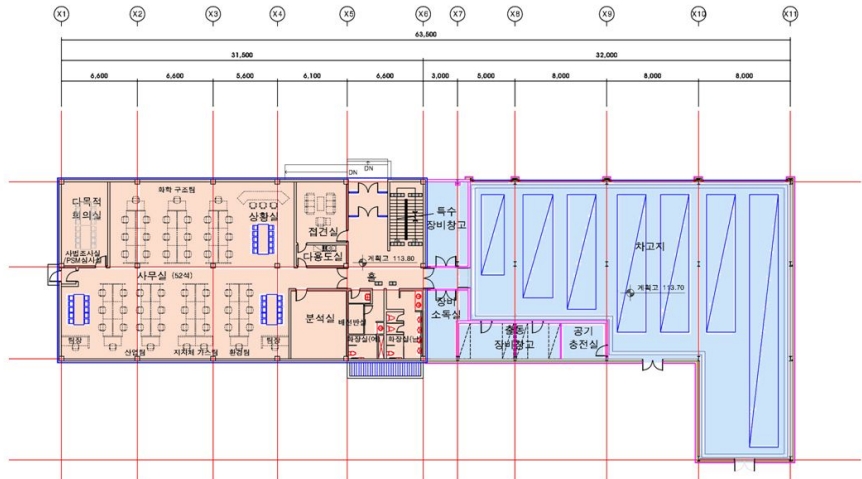


층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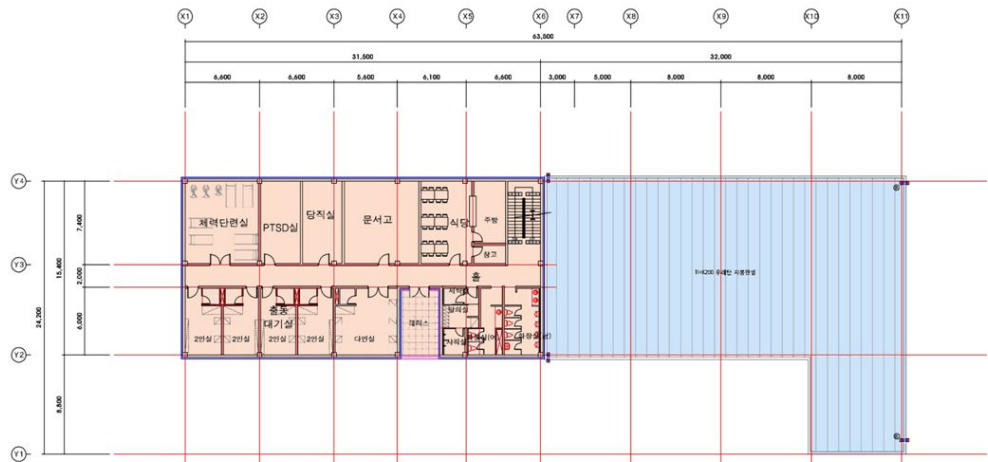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지상1층 평면도]



[지상2층 평면도]



5. 검토의견

- 본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합동방재센터)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시된 안건으로, 대구, 경북을 관할하는 합동방재센터 신청사 건립(이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